

제252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
검 토 보 고 서

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(기획경제국 일자리청년과 소관)



행정재경위원회
전문위원

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629호
- 나. 제출자 : 고영찬 의원
- 다. 제출일자 : 2024. 11. 12.
- 라. 회부일자 : 2024. 11. 12.

2. 제안이유

청년들의 취업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지역사회 고용촉진을 도모하고,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가 적은 청년들의 문화예술 향유권을 보장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청년의 능력개발과 역량향상을 위한 어학시험·자격시험 등의 준비비용을 추가함(안 제11조 제3항)
- 나.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한 면접 준비비용 지원 사항을 추가함(안 제12조 제5항 신설)
- 다.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문화활동비 지원 사항을 추가함(안 제16조 제3항 신설)

4. 관계법령

- 「청년기본법」 제4조
- 「청년고용촉진 특별법」 제3조
-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」 제2조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 우리구 청년들의 취업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지역사회 고용촉진을 도모하고,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가 적은 청년들의 문화예술 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
-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
 - 안 제11조 제3항에서는 기존 어학시험·자격시험 응시비용 뿐만 아니라 자격취득을 위한 학원 및 온라인 강의비, 교재비 등 어학시험·자격시험 등의 준비비용 지원 규정을 추가하고
 - 안 제12조 제5항에서는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해 증명사진 촬영비, 정장 대여료, 메이크업, 교통비 등 면접 준비비용 지원 규정을 신설함
 - 안 제16조 제3항에서는 영화, 뮤지컬, 도서, 음반 및 OTT 서비스 등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문화활동비 지원 규정을 신설함
- 본 개정 조례안은 최근 취업난과 각종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게 경제적인 것 뿐만아니라 문화예술 향유권을 보장함으로써 정신적으로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됨.

- 참고로 청년 면접 준비비 지원은 2024. 8. 27. 어학시험·자격 시험 준비 비용은 2024. 11.14. 사회보장제도 신설·변경 협의가 완료되었으나 문화활동비는 보건복지부와 협의중이며 금년 12월에 결정될 예정으로 소관부서에서는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있음.
-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규정과 자료를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붙임 1. 관계법령 1부.

2. 서울시 자치구 청년 문화활동비 등 지원현황 1부. 끝.

청년기본법

[시행 2023. 9. 22.] [법률 제19253호, 2023. 3. 21., 일부개정]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·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·실시하여야 한다.

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,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.

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을 수립·실시하는 경우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<신설 2023. 3. 21.>

청년고용촉진 특별법

[시행 2023. 12. 31.] [법률 제19940호, 2023. 12. 31., 일부개정]

제3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수급 전망, 청년 미취업자 실태 조사, 직업지도,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·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기업과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 및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기업(이하 “기업등”이라 한다)은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③ 「초·중등교육법」 및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각급 학교(이하 “대학등”이라 한다)는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, 직업 지도 및 직업현장 체험 기회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09. 10. 9.]

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

[시행 2011. 3. 18.] [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656호, 2011. 3. 18., 제정]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"문화예술"이란 문학, 미술 (응용미술을 포함한다), 음악, 무용, 연극, 영화, 연예, 국악, 사진, 건축, 어문 및 출판을 말한다.
2. "전통문화"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.
3. "문화시설"이란 공연, 전시, 문화 보급, 문화 전수 등 문화 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.

○ 자격시험 준비비 지원

자치구명	인당 지원금	지원형태	지원대상	비 고
노원구	16만원	지역화폐	19~39세 미취업청년	스터디카페·독서실 이용권 지원
도봉구	20만원	현금	19세 청년	온·오프라인 강의 수강료

○ 면접준비비 지원

자치구명	인당 지원금	지원형태	지원대상	비 고
마포구	10만원	현금	면접응시예정 청년	면접 헤어·메이크업 비용
(참고)경기도 청년면접수당	50만원	지역화폐	18~39세 구직청년 (1회 5만원x최대10회)	청년면접수당

○ 문화비 등 기타지원

자치구명	인당 지원금	지원형태	지원대상	비 고
성동구	20만원	바우처카드	19세 청년	성년출발지원금 / 문화체육활동 및 자기계발비 지원
	5만원	현금	19~39세 현역병 (중위소득 100%이하)	군복무 청년 문화체육활동비
노원구	10만원	바우처카드	19세~29세 미취업청년	거주요건 6개월이상 / 영화,도서,문구, 원데이클래스 등 지원
송파구	20만원	지역화폐	19세 청년	성년출발지원금